

#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한기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6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  
발 의 자 : 한기영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권수정, 권영희, 김인제,  
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  
송도호, 오중석, 이준형,  
전석기, 홍성룡, 황규복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시 종교 등을 고려한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8조 3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영장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영장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공영장레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8조(지원내용) ①·②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.</p>	<p>제8조(지원내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del>----- 제3항-----</del> -----.</p>